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9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인천대학교 통합,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으로 확대개편하고,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도시계획국으로 축소 개편하면서 감축·증원되는 정원에 대한 기능 재배치
- 나. 서부여성회관 신설 등에 따른 정원 배치
- 다.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및 국제자문대사 배치 등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- 정원총수 : 6,203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: 3,398명
 - 소방안전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2,200명
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509명
 - 의회사무처의 정원 : 96명
- 나.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3)
- 다.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4)

3. 정원 조정내역

가. 기구폐지 등에 따른 정원 감축 내역 : 7개부서 72명

① 종류·직급별

- 일반직 54명(3급 1, 4급 2, 5급 7, 6급 이하 44)
- 기능직 18명

② 기능별

-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기한만료('10. 3. 31) 2명
- 도시재생국 폐지 1국 1과 15명
-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통합 48명
- 기능 재조정 3개부서 7명

나. 기구신설 및 기능 재배치 등에 따른 증원 내역 : 28개부서 74명

① 종류·직급별

- 일반직 56명(3급 1, 4급 3, 5급 15, 6급 이하 37)
- 기능직 18명

② 기능별

- 가정복지국 신설 1국 6명
- 특별사법경찰과 신설 9명
- 장애인복지과 신설 6명
- 서부여성회관 신설 14명
- 보훈지원, 검단신도시 개발,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보강 10명
-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3명, 국제관계자문대사 1명
- 기타 행정수요 필요부서에 기능 재배치 16개부서 25명

4. 참고사항

가. 비용추계서 1 부(7쪽)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 부(8쪽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6,201명”을 “6,20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4호 중 “94명”을 “9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 및 소속기관				의 회 사무 처
			소계	본청	직속기관	경제자유 구역청	
총 계		6,203	6,107				96
정무직 소계		1	1				
일반직 소계		2,487	2,423				64
1급		1	1			1	
2급		1	1			1	
2급·3급		1					1
3급		19	19	10	2	4	3
3급·4급		1	1	1			
4급		109	107	58	6	16	27
5급 이하		2,355	2,294				61
별정직 소계		46	40				6
1급 상당		1	1	1			
4급 상당		9	3	1	2		6
5급 상당 이하		36	36				
연구직 소계		136	136				
연구관		20	20		16		4
연구사		116	116				
지도직 소계		23	23				
지도관		2	2		2		
지도사		21	21				
소방공무원 소계		2,200	2,200				
소방정		12	12	4	8		
소방령 이하		2,188	2,188				
교육공무원 소계		509	509				
총장		1	1		1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나 전임강사		414	414		414		
조교		94	94		94		
기능직 소계		801	775				26

[별표 4]

한 시 정 원(제4조제2항 관련)

구 분	직 종	직 급	정원	존속기한	비 고
총 계	계		49		
	일반직	3급	1		
		4급	4		
		5급이하	43		
	기능직		1		
본 청	일반직	5급이하	4	2011.3.31	-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
		3급	1		
		4급	4	2010.8.31	-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
		5급이하	39		
	기능직		1	2010.8.31	-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지방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<u>6,201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<u>94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,203명</u>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<u>96명</u></p>

비용소요 추계서

1. 법규안명

○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

2. 정원의 변동 내역 : 순증 2명

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출근거
총 계	112,293	
인건비	101,221	
○ 기본급	74,440	
- 봉급	68,926	5급(26호봉) 2,871,900원 × 2명 × 12월 = 68,925,600
- 상여금		
· 정근수당	5,514	68,925,600원 × 0.96 / 12 = 5,514,048
○ 수당	1,920	
- 장기근속수당	1,920	
· 20~25년 미만		110,000원 × 1명 × 12월 = 1,320,000
· 5~10년 미만		50,000원 × 1명 × 12월 = 600,000
○ 정액급식비	3,120	130,000원 × 2명 × 12월 = 3,120,000
○ 교통보조비	3,360	
· 4~5급		140,000원 × 2명 × 12월 = 3,360,000
○ 명절휴가비	6,893	68,925,600원 × 1.2 / 12월 = 6,892,560
○ 가계지원비	11,488	68,925,600원 × 2.0 / 12월 = 11,487,600
물건비	6,000	
○ 직급보조비	6,000	
· 5급		250,000원 × 2명 × 12월 = 6,000,000
이전경비	5,072	
○ 성과상여금	5,072	
· 5급		2,535,800원 × 2명 = 5,071,600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p> <p>제30조 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2. 본청·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<p>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.</p> <p>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